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7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이병진・박상혁・이소영

소병훈 • 이재정 • 권향엽

이상식 • 안태준 • 이원택

송재봉 • 문대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%, 채권보상 15%(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% 또는 40%) 및 대토보상 40%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, 양도소득세감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,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 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

60%, 채권보상 65%(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5% 또는 85%) 및 대토보상 80%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 자 함(안 제77조,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60"으로, "100분의 15"를 "100분의 65"로,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75"로,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85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75"로,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85"로, "100분의 15"를 "100분의 10"으로, "100분의 25"를 "100분의 20"으로 한다.

제77조의2제1항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80"로 한다.

제133조제1항제1호 중 "1억원"을 "3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"2억원"을 "5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

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	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
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다	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	
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	
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	
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	
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	
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	
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	
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	
득세의 <u>100분의 10</u> [토지등의	<u>100분의 60</u>
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	
서는 <u>100분의 15</u> 로 하되, 「공	<u>100분의 65</u>
공주택 특별법」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	
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	
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	
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	
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	
<u>100분의 30</u> (만기가 5년 이상인	<u>100분의 75</u>

경우에는 <u>100분의 40</u>)]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100분의 40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 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5(만기가 5년 이 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

⑤ ~ ⑨ (생 략)

제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조소득세 과세특례) ① 거주자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

<u>100분의 85</u>
<u>100분</u> 의 75 <u>100분의 85</u>
<u>100분의 10</u> <u>100분의 20</u>
⑤ ~ ⑨ (현행과 같음) 세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) ①

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 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(이하 이 조에서 "대토보상"이라 한다)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) ① 개인이 제33조, 제43조,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, 제69조의2부터 제69 조의4까지, 제70조, 제77조, 제7 7조의2, 제77조의3,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감면받 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

<u>100분의 80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
제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
제133조(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) ①

자산양도의	순서에	따라	합산
한다.			

- 1. 제33조, 제43조,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, 제70조, 제77조의3,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
- 2.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.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.

가. (생략)

나.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 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2 부터 제69조의4까지, 제70 조, 제77조 또는 제77조의2

	· _.
1	•
1.	
	<u>3억원</u>
2.	
	가. (현행과 같음)
	나

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 금액

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

<u>5억 원</u>	<u>-</u>
	-

② · 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